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2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전용기 · 한준호 · 정준호
문진석 · 안태준 · 박정현
박선원 · 김원이 · 윤종균
신정훈 · 이용선 · 이연희
김남희 · 송옥주 · 한민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4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가 결정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제7호-----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